##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635

제안년월일: 2019년 4월 30일 제 안 자: 환경수자원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40호)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582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한강시민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원을 폐지, 보다 탄력적인 남북협력분야 논의 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또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가편결제시스텎("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텎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제6호)
- 나. 한강시민위원회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정원(수) 삭제, 4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 2항)
-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라. 그 외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설은"을 "시설을"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 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 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제1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제6항 중 "제13조 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의2"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2항 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별지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4조 중 "기타 이 조례시행과"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시장이 따로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4조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1
녹지 등에 관한 법률」 <u>제2조 제1</u> 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u>제2조제1호</u> 
한강수계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u>시설은</u> 제 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하천법」	② <u>시설을</u>
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l.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 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 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 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

- ③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 ④ ~ ⑤ (생 략)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 저 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9. (생략)
  -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1. ~ 15. (생략)
  - ② (생 략)

사유와 궁족되는 경우에는 그 중 삼
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3
<u>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u>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b>6</b>
<u>제13조제1항</u>
·.
∥17조(금지행위)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
<u>한 법률」 제2조제1호의2</u>
11.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유어행위 금지) ①、② (생 제18조(유어행위 금지)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 제2항제2호-----③ 시장은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하며, 금 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 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 ②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17조에 해당되는 위 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 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별지1호 서 -----(별지 제1호 식).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서식).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 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 처리) ① (생 략) 제21조(페기물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나 이용자로부터 페기물의 배출량에 따 라 처리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 량제"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종량 ----- 「서울특별 제 실시 대상 폐기물은 「서울특별 시 페기물관리조례」제6조제2항제 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6조제2항 2호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 장 4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성한다.
- ③ ~ ⑥ (생 략)
-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호----.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생 략)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 규칙